1-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(취업애로청년)

❶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
○ 채용일 기준 가장 **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** 상실일**로부터 **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**한 청년

* (예) ‘24.2.23.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‘24.6.23.부터 지원대상에 포함

** 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으로 취득·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

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

√ 「고용보험법」상 일용근로 내역

√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 등)

확인 방법

√ 고용센터는 바로원,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,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

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
- 채용일 기준 **고졸 이하 학력*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****인 청년

*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자(졸업예정자 포함)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

**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(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), 시·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‘현장실습 선도기업’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/3 출석한 자도 포함

***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

-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「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」(청년 본인 서명, [서식6-2])’를 받아 제출하고,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‘고졸’에 체크

확인 방법

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「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」를 제출받아 확인

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**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**
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

-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, 섬 지역 거주자

확인 방법

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

√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

❹ **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*하거나,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**한 후 최초***로 취업**한 청년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)

**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(유형 무관) 수료한 청년

*** "최초"는 생애 최초가 아닌 "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"를 의미함(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'최초취업' 판단시 제외)

확인 방법

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

❺ **청년도전지원사업* 수료 청년**

*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

확인방법

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

❻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**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**되는 청년

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(예시)

√ (자립준비청년)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)

√ (보호연장청년)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의3)

√ (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)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(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1조)

확인 방법(예시)

√ (자립준비청년)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'보호종료 확인서'를 제출받아 확인하며,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

√ (보호연장청년)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'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' 또는 '가정위탁보호확인서'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,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

√ (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)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'입·퇴소 확인서'를 제출받아 확인하며,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에서 발급

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*에서 이직 후 최초*로 취업한 청년 (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3조)

*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

** "최초"는 생애 최초가 아닌 "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"를 의미함

❽ **북한이탈청년***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"북한"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~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확인방법

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「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민원24 발급 가능)」를 제출받아 확인

❾ 자영업 **폐업 이후, 최초*로 취업**한 청년

* "최초"는 생애 최초가 아닌 "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"를 의미함

확인 방법

✓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「폐업사실증명원」(국세청 발급)을 제출받아 확인

❿ **최종학교 졸업일** 이후 채용일까지 **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* 미만인 청년**

*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(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)

**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자(졸업예정자 포함)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

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

✓ 「고용보험법」상 일용근로 내역

✓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 등)

확인방법

✓ 고용센터는 바로원,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,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·확인

1-4 근로조건 등

○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
✓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
✓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
○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○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
*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